

『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용어를 재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이 되는 규제를 자체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명시(안 제4조, 안 제10조)
- 용어 재정비(안 제10조의2)
- 위탁 취소 범위 중 불명확한 내용 삭제(안 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T/F팀과 합의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조항 등을 수정, 삭제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와 안 제10조 및 안 제10조의2에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추가 및 용어의 재정비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,
- 안 제14조에서 위탁 운영의 철회 범위 중 내용이 불명확한 제5호 (“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”)를 삭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조항 등을 수정, 삭제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